

#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

의 안 번 호	279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11. 20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평창군의회 심의,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**가.**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04,08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,73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,289백만원이 증액된 251,892백만원 특별회계는 3,444백만원이 증액되어 52,192백만원임.

## 나. 세입예산은

일반회계가 지방세 22,555백만원, 세외수입 6,756백만원, 지방교부세 141,291백만원, 재정보전금 5,000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72,240백만원,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,050백만원 임.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,174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35,272백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9,746백만원 임.

## 다.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 정책사업비 195,731백만원(예비비 3,000백만원 포함), 행정운영경비 43,684백만원, 재무활동 12,477백만원이며,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50,669백만원, 행정운영경비 1,382백만원, 재무활동 141백만원임.

## 관계법령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 제127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### □ 지방재정법 제36조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·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40조

- ① 예산은 예산총칙, 세입·세출예산, 계속비,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(明示移越費)를 총칭한다.
-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·세출예산, 계속비,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,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